

“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한 행복한 육아 실현”
상생협력 업무 협약서

(사)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(이하 “양자” 라 한다)는 기관간의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영·유아와 부모의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바른 식생활교육 공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한 행복한 육아 실현을 위해 양자 간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업무협력의 내용 및 범위)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영·유아, 보육교사, 조리사 및 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
2. 양자 간 영·유아 식생활교육사업 전개
3. 영·유아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적용
4. 양자 간 지역조직을 활용한 지역협력사업 발굴·지원

제3조(기관별 역할)

1. (사)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

- 가. 영·유아, 보육교사, 조리사 및 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시행
- 나. 육아종합지원센터 협력을 통한 영·유아 식생활교육사업 전개
- 다. 유아용 식생활교육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활용촉진
- 라. 시·도 및 시·군·구 네트워크 연계망을 활용한 지역협력사업 시행

2.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

- 가. 영·유아, 보육교사, 조리사 및 학부모를 위한 식생활교육프로그램 개설
- 나. 영·유아 식생활교육사업 소개, 시행 어린이집 발굴·추천
- 다. 영·유아 식생활교육 콘텐츠의 어린이집 정보제공
- 라. 시·도 및 시·군·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역협력사업 시행

제4조(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) 양자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령,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, 협약이행·교류·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를 이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양자 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.

제6조(협약탈퇴·해지) 협약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배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지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) 양 기관은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 협력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2016년 9월 19일



상임대표 황 민 영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over a horizontal line.



센터장 마 미 정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over a horizontal line.